#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사실유무확인서 신청·발급 안내

'23.12.5.(화) / 스포츠유리센터

박근	그 HH	경
	3 YII	0

<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 > (2022, 8, 11, 시행)

-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, 지방체육회, 대한장애인체육회, 지방장애인체육회,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 (「학교체육 진흥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운동부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체육회등"이라 한다)에 소속된 선수(「학교체육 진흥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선수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, 체육지도자, 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(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 하여야 한다.
- ④ 체육회등의 장은 선수, 체육지도자, 심판 및 임직원과 채용 계약(재계약을 포함한다)을 체결할 때에는 선수, 체육지도자, 심판 및 임직원에게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 징계 이력을 확인하여야 한다.

#### □ 발급대상

- (의무 발급대상) 체육회 등\*과 채용계약을 체결하는 선수, 체육지도자, 심판 및 임직원(최종합격, 재계약 포함)
  - \* 대한체육회, 지방체육회, 대한장애인체육회, 지방장애인체육회,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

#### □ 신청 · 발급

- o (신청주체) 채용예정자
- (신청방법) 징계정보시스템(<a href="https://dis.k-sec.or.kr">https://dis.k-sec.or.kr</a>) 접속 후 개인 신청 ※ 기존 신청방법(채용기관 공문접수)으로 신청 시 확인서 발급 제한
- (발급절차)

사이트 접속 □ 회원가입 (본인인증 및 소속정보 입력) □ 신청 □ 조회/발급

- o (소요기간) 신청내역 접수일로부터 최대 14일까지 소요
  - ※ 확인서 발급 소요기간과 채용기관 제출 시기를 고려하여 신청 권고
- **(문의처)** 스포츠윤리센터 1670-2876(연결 후 2번)
  - ※ 징계이력 관련 사항은 징계기관에 문의

# 참 고

# 자주하는 질문(FAQ)

## [회원가입 및 나의 정보 수정]

- Q. 채용예정자의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이 필요합니다. 기관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되는건가요?
- ☞ 확인서 신청주체는 '채용예정자'로, 당사자가 회원가입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. 채용기관은 채용예정자가 발급받은 확인서를 제출받으시면 됩니다.
- O. '②본인인증' 후 '③회원정보 입력'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.
- □ 주소창에 <a href="https://dis.k-sec.or.kr">https://dis.k-sec.or.kr</a>을 작성하여 사이트 접속을 하시고, 팝업 차단을 모두 해제하여 재시도하시기 바랍니다.
- Q. 소속정보에는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하나요?
- □ 신청인이 체육과 관련하여 '선수, 지도자, 심판 체육기관·단체 임직원 등'으로 활동하신 모든(현재/과거) 이력을 입력하시면 됩니다. 다만, 사설단체(ㅇㅇ학원 등)의 지도자·직원 경력은 제외합니다.
- Q. 소속정보를 잘못 입력하여 수정하고 싶습니다.
- ☞ 로그인의 '나의 정보 수정'에서 소속정보를 추가 및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.

## [신청·발급]

- Q. 모바일로도 신청·발급이 가능한가요?
- ☞ 확인서 신청·발급은 PC로만 가능합니다.
- Q. 제출처/발급용도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?
- □ 제출처에는 발급받을 확인서를 제출할 기관명을 작성하시면 됩니다. 발급용도가 채용기관 제출용일 경우 '채용'으로, 그외 용도일 경우 '기타'를 선택 하시어 기타용도를 입력하시면 됩니다.
- Q. 확인서를 신청했습니다. 언제 발급되나요?
- ☞ 확인서가 신청·접수·발급이 완료되면 회원가입 시 입력한 전화번호로 안내메세지가

전송됩니다. 신청하신 확인서는 접수일로부터 최대 14일 이내에 발급되며, 접수량과 관계기관 상황에 따라 소요기간이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- O. 확인서가 접수가 되었다고 하는데,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.
- □ 신청하신 확인서는 접수 후 신청인에 대한 징계이력 조회가 완료되는대로 발급됩니다. 발급이 완료되면 회원가입 시 입력한 전화번호로 안내메세지가 전송되며, '확인서 출력' 탭에서 발급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- Q. 확인서 제출이 급한 상황입니다.
- □ 신청하신 확인서는 접수일로부터 최대 14일 이내에 발급되며, 접수량과 관계기관 상황에 따라 소요기간이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확인서 발급 소요기간과 채용기관 제출 시기를 고려하여 신청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.
- O. 확인서 신청을 취소하고 싶습니다.
- ☞ 사이트 메인화면의 '진행사항 조회' 탭을 누르면 신청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, 접수되기 전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. 접수가 완료된 경우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.

#### [진행사항 조회]

- O. 확인서 신청을 완료했습니다. 신청한 내역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?
- ☞ 신청내역은 사이트 메인화면의 '진행사항 조회' 탭을 눌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# [확인서 출력]

- Q. 확인서를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?
- □ 사이트 메인화면의 '확인서 출력' 탭을 눌러 발급이 완료된 확인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.

#### [진위확인]

- Q. 제출받은 확인서가 진본(원본)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?
- □ 사이트 메인화면의 '진위확인' 탭에서 발급번호 입력을 통해 진위확인이 가능합니다.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해 발급된 확인서 하단의 '발급확인 번호'를 입력하시어 진위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